

2016. 4.

---

---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용역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

---



**치안정책연구소**

본 과업지시서는 치안정책연구소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의 적정한 수행 과업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I 사업의 개요

### 1. 용역 개요

- 용역명 :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 연구내용 : ① 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② ICCS와 죄명코드 연계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③ 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제시
- 사업금액 : 3,000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

### 2. 사업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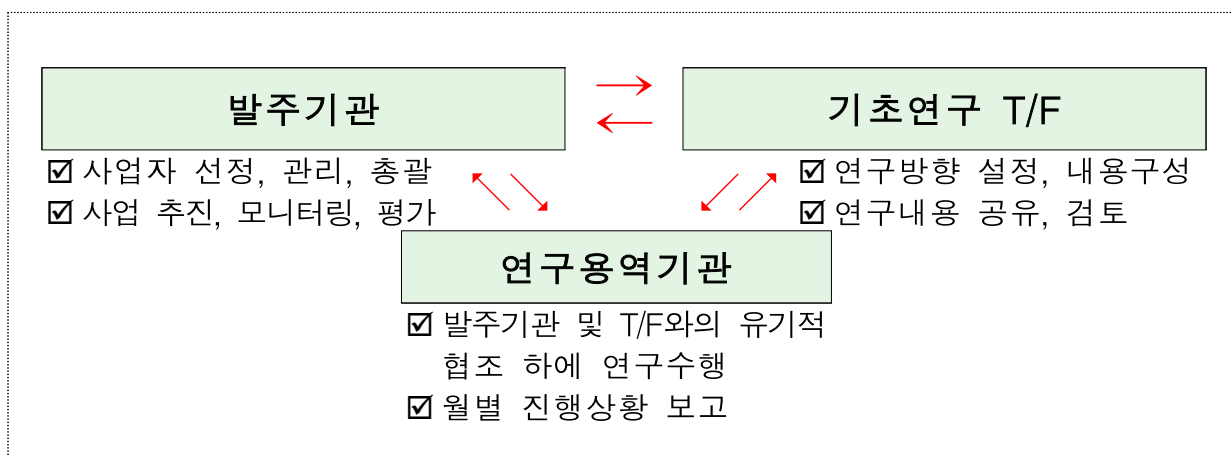
- 국제기구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채택 및 이행 권고에 따라 한국범죄분류 개발 필요성이 대두
  - 통계청,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형사정책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개발 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 등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우선 실시하기로 합의
-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는 멕시코통계청(INEGI)과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공동 개발,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15. 3.)에서 국제표준 채택
- 국제표준범죄분류(ICCS)는 2012년 유럽 통계기관장회의에서 승인된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과 유엔유럽경제이사회(UN-Economic Commission of Europe)의 '국제표준 범죄통계분류 원칙 및 프레임 워크'를 시작으로,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의, UNODC 등이 논의 및 자문을 거쳐 회원국에 회람
- 나라마다 상이한 법률체계 때문에 각 국가가 생산하는 범죄통계의 품질뿐만 아니라 자료집계 기준 및 방법이 달라 범죄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및 공유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여러 국가가 서로 협의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분류에 가까운 분류체계를 공유 및 공동수정함으로써 가급적 표준화된 방식의 범죄분류체계를 마련
- 따라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를 이행하여 한국범죄분류를 개발·적용함으로써 범죄통계의 국제비교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되는 범죄통계의 기준과 분류를 통일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일관성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

### 3.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통해 장기 개발 로드맵 도출
- (기대효과)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되는 범죄통계의 기준과 분류를 통일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일관성 및 정책 활용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반 제공

### 4. 사업 수행체계



## 1. 연구 내용

- (2016년)에 ① 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② ICCS와 죄명코드 연계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및 ③ 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제시
  - 형사정책연구원과 치안정책연구소가 ①과 ②를 대분류별로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양기관 연구진 및 기초연구 T/F팀 공동으로 ③ 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도출

### ①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 범죄행위 내용의 유형별 분류인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체계를 분석하고 죄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ICCS 분류체계, 매뉴얼 등을 번역
- 범죄분류 관련 국제동향, 해외 이행사례 자료 등 수집
  - \* 필요시 발주기관 또는 T/F팀과 공동으로 범죄분류 및 범죄통계 관련 국제회의 참석하여 동향파악 및 국제분류에 한국 의견 개진
- 국내 모든 기관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한글용어 정의
- 국제분류와 한국 범죄 정의 비교, 주요국의 법률체계와의 차이 분석을 통해 누락되거나 적용이 어려운 죄명에 대한 재정의
- 죄명에 포함된 위법행위가 하나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호 배타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분류체계 정립에 필요한 대분류(section), 중분류(division), 소분류(group), 세분류(classes)별 범죄행위를 해석, 정의, 범주화 하는 번역 및 분석 작업 수행
- 대분류 1. 타인을 사망케 한 행위 혹은 사망을 기도한 행위(살인 및 치사 등), 2.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행위 혹은 그 미수 행위(폭력)... 등 11개 대분류에 대한 정의 및 행위유형 분류

| Section 01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       |        |   |
|--|-------|--------|---|
| DIVISION   | GROUP | CLASS  | CRIME   |
| 0101   |       |        | Intentional homicide                                    |
| 0102   |       |        |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
| 0103   |       |        | Non-intentional homicide                                |
|  | 01031 |        | Non-negligent manslaughter                              |
|  | 01032 |        | Negligent manslaughter                                  |
|  |       | 010321 | Vehicular homicide                                      |
|  |       | 010322 | Non-vehicular homicide                                  |
| 0104   |       |        |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
|  | 01041 |        | Assisting suicide                                       |
|  | 01049 |        |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
| 0105   |       |        | Euthanasia  |
| 0106   |       |        | Illegal feticide  |
| 0107   |       |        | 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
| 0109   |       |        | 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

## ② 죄명코드와 국제분류 연계성 분석

- 한글용어로 정의된 국제분류에 따라 한국 범죄통계 작성 체계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계 작업 수행
- 국제분류의 세분류 코드와 KICS상 죄명코드의 연계성 분석
- 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 범죄를 국제분류체계에 적용하여 집계하기 위해 죄명코드 세분화 등 원자료 분석 필요성 등 검토
- 죄명과 행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한 원인분석, 규칙성 발견 및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 추론
- 기수와 미수, 고의와 과실, 침해법익(생명과 재산) 등의 해석과 범주 구분
- 죄명만으로 가능한 분류, 원표 상 가능한 분류, 추가 정보수집이 필요한 분류 등으로 구분
- 기타 국제분류와 한국 법체계 차이와 관련하여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쟁점 발굴 및 연구범위 설정



### ③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장기 로드맵 도출

- 해외동향 및 문헌연구, 죄명코드와 ICCS 연계 분석 등을 통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선행과제 및 추가 연구과제 도출
- ICCS 기반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 및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고 연도별 개발 일정,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제언
- 형사사법기관 간 유사·중복 통계 생산 방지, 신뢰할 수 있는 범죄 통계의 대국민 공개를 위해 국가승인통계 구축, 치안정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범죄지표 개발 등 범죄통계 발전 장기 로드맵 제시
- 한국 범죄지표 및 죄명 정의에 대해 합의 도출, 전문가 그룹 세미나 또는 공청회 추진 계획 수립

#### <경찰청 범죄통계 최종 분류>

| CODE      | DESCRIPTION                            |
|-----------|--|
| 20903160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범죄 |
| 20903160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범죄 |
| 2099101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 2099101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범죄          |
| 2099101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범죄          |
| 2099102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범죄           |
| 2099102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범죄           |
| 2099102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범죄           |
| 2099103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범죄          |
| 2099103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범죄          |
| 2099103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범죄          |
| 2099104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범죄             |
| 2099104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범죄             |
| 2099104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범죄             |
| 2099105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범죄             |
| 2099105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범죄             |
| 2099105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범죄             |
| 2099106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수폭행)범죄           |
| 2099106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수폭행)범죄           |
| 2099106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수폭행)범죄           |
| 2099107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치상)범죄           |
| 2099107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치상)범죄           |
| 2099107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치상)범죄           |
| 2099108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수폭행치상)범죄         |
| 2099108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수폭행치상)범죄         |
| 2099108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수폭행치상)범죄         |
| 2099109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기)범죄             |
| 2099109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기)범죄             |
| 2099109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기)범죄             |
| 2099110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중유기)범죄            |
| 2099110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중유기)범죄            |
| 2099110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중유기)범죄            |
| 2099111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영아유기)범죄           |
| 2099111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영아유기)범죄           |
| 2099111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영아유기)범죄           |
| 2099112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범죄             |
| 20991120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범죄             |
| 20991120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범죄             |
| 20991130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마포로사)범죄           |

<국제분류-한국 범죄통계 분류 예시>

| SECTION 03  |  |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   |
|---|--|-----------------------------------|---|
| <b>0302 Sexual exploitation</b><br>Acts of abuse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power or trust, or use of force or threat of force, for profiting financially, physically, socially or politically from the prostitution or sexual acts of a person. <sup>82</sup>   |  | +                                 | <b>Inclusions:</b>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3021 - 03029   |
|   |  | -                                 | <b>Exclusions:</b> Rape (03011); sexual violence (0301); prostitution offences, pornography offences and other acts against public order sexual standards such as incest and exhibitionism (0802); abuse of function (07033); assaults and threats (0201); slavery and exploitation not amounting to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203); TIP for sexual exploitation (02041); harassment and stalking (0207); status offences (11021) |
| <b>03021 Sexual exploitation of adults</b><br>Sexual exploitation of an adult.<br>- Sexual exploitation as defined in 0302.   |  | +                                 | <b>Inclusions:</b> Recruiting, enticing or procuring a person into prostitution; pimping; keeping, managing or knowingly financing a brothel; knowingly letting or renting a building or other place for the purpose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   |  | -                                 | <b>Exclusions:</b>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302  |
| <b>03022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b><br>Sexual exploitation of a child.<br>- Sexual exploitation as defined in 0302.<br>- Child as defined in national legislation.   |  | +                                 | <b>Inclusions:</b>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creating child pornography, recruiting, enticing, procuring a child into prostitution; pimping; keeping, managing or knowingly financing a brothel for child prostitution; knowingly letting or renting a building or other place for the purpose of the prostitution of children;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30221 - 030229   |
|   |  | -                                 | <b>Exclusions:</b> Statutory rape (030113);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302   |
| <b>030221 Child pornography</b><br>Procuring, arranging, facilitating or controlling a child for the purposes of creating child pornography and/or possessing, disseminating, broadcasting, transmitting, exhibiting or selling child pornography. <sup>83</sup><br>- Child as defined in national legislation. |  | +                                 | <b>Inclusions:</b>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sharing child pornography; creating child pornography; downloading child pornography, procuring sexual images or other forms of child abuse materials from children   |
|   |  | -                                 | <b>Exclusions:</b> Pornography offences (08022);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3022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죄명   |
|------|-------|-----------------------------|--|
| 풍속범죄 | 성풍속범죄 | 간통                          | 형법 제241조 간통  |
|      |       | 혼인빙자간음                      | 구)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  |
|      |       | 혼인빙자간음(위계간음)                | 구)형법 제304조 위계간음  |
|      |       |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      |       | 음행매개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
|      |       | 음화등반포<br>(판매, 임대, 전시, 제조)   | 형법 제243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br>형법 제244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 |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유포)  |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음란물제작배포)  |
|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 Ⅲ 제안 안내

#### 1.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처 : 조달청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각 10부)
  - ※ 제안내용이 수록된 CD 2장(조달청 보관분 포함)
- 문의처 : 치안정책연구소 (041-968-2591)

####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도 참여가능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 공동수급 불가

#### 3. 작성 요령 <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A4 용지 3 hole 바인더 사용(제본 지양)】
- 제안서는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한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요약본 분리 후 10부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IV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

### 1.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별첨 2 '평가 기준'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4, 2012. 1. 1)” 적용
  -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 2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예정)

## 2.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3.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4. 가점 요인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 5. 감점 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 등

## V 과업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 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1개월 전후 및 2개월 전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에 다음과 같이 제출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10부
  - 최종보고서 : 10부(DVD 3개)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한글, 엑셀자료 포함) 등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 【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 제안서 목차              | 작성 내용  | 비고  |
|---------------------|--|-----|
| <표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 참조</li> </ul>  | 서식1 |
| I. 제안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간략히 요약</li> </ul>   |     |
| II. 제안 업체 현황        |  |     |
| 1. 일반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li> <li>• 자본금 및 매출액</li> </ul>  | 서식2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li> </ul>   | 서식3 |
| III. 연구용역 수행 계획     |  |     |
| 1. 연구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li> </ul>  |     |
| 2. 연구용역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li> </ul>   |     |
|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li> </ul>   |     |
| 4. 연구 용역 이행 방안      |  |     |
| 가. 연구추진 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li> </ul>  | 서식4 |
|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틀</li> <li>• 이행절차별 산출물</li> <li>• 보고회 관련 행사 계획<br/>(참여자 범위, 행사규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li> </ul>   |     |
|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br/>(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li> <li>•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li> </ul>   | 서식5 |
| IV. 정책 활용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방안</li> </ul>  |     |
| V.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li> <li>•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li> <li>• 용역관련 경찰청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li> <li>•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li> <li>•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li> <li>• 각종 증빙자료 첨부(자본금 등)</li> </ul> | 서식6 |

## 【별첨 2】 기술능력 평가표

| 대항목<br>(배점한도)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제안업체현황<br>(10)            | 과제관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 연구기관의 사업분야와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유사성 정도</li> </ul>  | 10 |
| 연구용역<br>수행계획<br>(50)      | 연구목적<br>및<br>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부합성</li> <li>연구과제 반영 수준</li> <li>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li> </ul>   | 10 |
|                           | 이행절차<br>및<br>연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이론, 기법, 분석틀 등의 적정성</li> <li>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li> <li>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li> <li>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li> <li>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li> </ul> | 25 |
|                           | 수행조직<br>및<br>업무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li> <li>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li> <li>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li> </ul>   | 15 |
| 예산집행<br>계획<br>(10)        | 연구비<br>집행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li> <li>비목별 경비 구성 비율의 적정성 등</li> </ul>   | 10 |
| 정책활용방안<br>및<br>기타<br>(10) | 연구결과<br>활용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결과의 활용도</li> <li>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li> <li>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li> <li>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li> </ul>                                 | 10 |

〈서식1〉 과제제안서 표지

|        |  |        |  |
|--------|--|--------|--|
| ※ 접수번호 |  | ※ 관리번호 |  |
|--------|--|--------|--|

201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용역

# 과 제 제 안 서

|                     |            |       |  |     |
|---------------------|------------|-------|--|-----|
| 과 제 명               | 국 문        |       |  |     |
|                     | 영 문        |       |  |     |
| 연구책임자               | 소 속        |       |  | 성 명 |
| 연구진 구성<br>(연구책임자포함) | 책임 및 공동연구자 | 연구보조원 |  | 계   |
|                     | 명          | 명     |  | 명   |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치안정책연구소장 귀 하

## 〈서식2〉 일반현황서

### 일반현황 및 연혁

|   |                  |       |  |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
| <input type="checkbox"/> 주요 연혁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                  |       |  |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 년 | 년 | 년 |
|-----|--------------|---|---|---|
| 자본금 |              |   |   |   |
| 매출액 | ○○부문<br>○○부문 |   |   |   |
|     | 합계           |   |   |   |



〈서식4〉 연구추진 일정

연구추진 일정

|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   |   |   | 비 고 |
|-----------|-------------|---|---|---|---|-----|
| 연구용역 추진사항 | 월           | 월 | 월 | 월 | 월 |     |
|           |             |   |   |   |   |     |

〈서식5〉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          |           |           |           |      |     |
|----------|-----------|-----------|-----------|------|-----|
| 소 속      |           | 직 위       |           |      |     |
| 성 명      |           | (한자)      |           |      |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     |
|          |           |           | 자 택 :     |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유사<br>경력 | 용역명       | 담당업무(자세히) | 참여기간      | 발주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